

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1989년 해당 조례 제정된 이후 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았으나,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)

2)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
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
미첨부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 2206